



[ 2017.7.11 ] [ 223 , 2017.7.11, ]

( ) 044 - 203 - 6855

1

1 ( ) 「 」 ( " " ) ( " " ), ( " " ) ( " " )

2 ( )

1. " "

2. " " 가

3. " "

4. " " 6 1

( " " ) , " "

5. " " 가

6. " "

7. " " 가 .

8. " "

9. " "

10. " " , " " 가 . , ,

11. " ( 「 가 」 12 6 " " )"

---

3 ( )

가

1. ( , , , , )

2.

3. ,

4. ( " " )

2

4 ( )

( " " )

1. .

2. ,

3.

1 15

5

가

2

1 ,

가

5 ( )

( " " )

1 20

가

, 1 8

가

가

---

6 ( 가 )  
가 가 .

7 ( ) 가 ,  
. ,  
.

8 ( ) . ( ,  
1 )  
), 9

1. . , ,
- 2.
- 3.
- 4.
5. 가
- 6.
- 7.
8. 4 5 가
- 9.

3

9 ( ) 「 , 「 , 「  
」, 「 」 32

- 1.
- 2.
3. 가
4. ,
5. 가
6. 10 2 4 5 가

---

7. 가

8.

9.

1  
가

10 ( ) 2

1.

2.

3.

4. ( )

5.

6.

1.

2.

3. ( )

4.

5.

6. ( )

7.

8.

9.

4

11 ( ) 4

, 4 5 ( " " )

1.

---

2.

3.

4.

5.

6.

7.

8.

9.

10.

11.

( 가 )

)

12 (

)

( "

" )

1.

2.

3.

, 가

4.

5.

6.

7.

1

2

13 (

)

5

2

1

1

1

2

1

5

---

14 ( )

- 1. 가가
- 2.
- 3. .
- 4.
- 5.

15 ( )

12

30

1

- 1.
- 2.
- 3. 가
- 4. , ,

16 ( )

15

- 1.
- 2.
- 3. .
- 4. ( )
- 5.
- 6.

1

17 ( 가 )

가

가

가

, 가

1

1

가

, 가

가

가

( " 가 " )

가

- 1.
- 2. , , ,

3. 11

12

가

3

가

가

3

38

1

29

4

가

가

1

가

가

가

100

60

가

, 가

가

8

7

30

가

3

18 (

)

가

3

1

,

1.

2.

, 가

3.

4.

5.

6.

7.

5

, ,

19 (

)

30

(

25

)

1.

2.

3.

4.

( )

5.

( )

6.

가

- 
- 7.
  - 8.
  - 9.
  - 10.

1                      13                      2                      ,                      2

20 (                      )                      가                      3

- 1.
- 2.
- 3.
- 4.

가                      가

1                      .

21 (                      )                      가

- 1. (                      )
- 2.
- 3.

1                      가                      ,

1                      (                      ,

)  
20

6

22 (                      )                      .                      .

1

(                      )

---

5

1

, 가

6

가

가

23 ( )

24 ( )

( 22 3

)

가

100 2

100 20

2

3

1.

2.

1

25 ( )

3

3

1

100 5

, 1

4

1. , (騙取) (流用) : 3 5

2. : 2 3

3. (轉用) : 2

26 ( )

, 가

1

1. 10

2. 10,000

3.

4. ( , 21 1

)

5.

6.

1

, , ,

2 3

1

가

1

1

3

---

27 ( )

7 가

28 ( 가)

1. ( )

2.

가( )

가

가

6

, 2

2

가 ,

15

가, 4

가

29 ( )

6

1.

2.

3.

4.

1

2

가

" "

" "

,

가

(

가

)

가

,

가

---

30 ( )

2

1. ( )

2. ( : A&HCI, SSCI, SCI(E), Scopus )

3. ( )

6

2

2

가

2

10 1

가

31 ( )

10 1

가

1

가

1

가

가

1

4

32 ( )

가

1.

2.

가

3.

1

26 1

33 ( )

---

1      2      가

가

( 「      」

)

34 (      )

가

35 (      )

,      ,      가      가      ,

36 (      )      12      12      13  
(      )

8

37 (      )      5  
29

38 (      )

,      1      4

1.      ,      : 5

2.      : 2      5 (      25      6      )

3.      (      ,      )      : 2      5

---

4. : 1

5. 9 1

6. 가

7.

8.

1 5 8 ,

1

「 가 」 27

1 4 가

15

가

가

가

1

5

39 ( )

1

40 ( )

가

41 ( )

42 ( )

---

< 111 ,2009.1.1 >  
1 ( ) 2009 1 1 .

< 160 ,2010.1.29 >  
1 ( ) 2010 1 29 .

< 200 ,2011.2.11 >  
1 ( ) .

< 26 ,2013.11.4 >  
1 ( ) .  
2 ( ) 「 . 」 ( 248 )  
2016  
,  
10 31 .

< 112 ,2014.8.21 >  
1 ( ) .  
2 ( ) 「 . 」 ( 248 )  
2016  
,  
10 31 .

< 223 ,2017.7.11 >  
1 ( ) .  
2 ( ) 「 . 」 2018 1 1 3  
( 3 12 31 ) .

[별표 1]

**학술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 1)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2) 해당 분야 학술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이상인 사람
- 나.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직원(단,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정책적 필요에 의해 전문성을 인정한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다)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
- 2) 평가대상과제의 참여연구원
- 3) 상호간 평가자

비고: “상호간 평가자”란 다음과 같다. 연구과제 A와 연구과제 B에 대한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경우, A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a가 B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되는 것과 동시에 B과제에 참여했던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책임자 b가 A과제에 대한 평가자가 될 때의 a와 b를 말한다.

다.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동일학과 또는 동일학부에 소속된 전문가로 한정한다.

라. 불성실·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제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처리규정 제15조의 사업공고 시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별표 2]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

결과물 발표 시, 반드시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 학술활동 결과물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연구비 지원이 아닌 타기관 일부 지원 병기표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별지 제1호 서식]

## 위탁사업협약서

(교육부와 전문기관과의 협약용)

### □ 위탁사업의 내용 및 사업 관리비

- 위탁 사업명 :
- 위탁 사업 관리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 연구기간 :

### □ 협약 당사자

- 교육부 장관
- (전문기관의장)

### □ 주관연구책임자

- 소속 :                                    직급(위) :                                    성명 :

위 위탁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업무의 내용) 첨부『위탁사업 계획서』의 내용과 동일함

제2조(위탁사업비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 위탁에 따른 사업관리비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사정 고려 및 사업 위탁의 변경 또는 취소 시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전문기관의 장)은 지급받은 정부출연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고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의 변경) ①정부의 예산사정, 긴급한 상황에 의해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

---

거나 (전문기관의 장)로부터 협약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교육부장관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변경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관의 변경 등)**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일부 사업의 위탁기관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관의 변경이나 주관연구책임자를 교체할 수 있다.

**제6조(협약의 해약등)** ①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업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문기관의 장)이 위탁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될 때
2. (전문기관의 장)이 위탁업무처리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
3. 기타 동 사업 관련 정부정책의 변화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의 해약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은 이미 교부한 출연금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으며, 그와 관련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수탁업무 결과보고)**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시행결과보고서』를 수탁관리 종료 후 3개월 내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되, 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지원내역
2. 수탁사업 관리비 집행실적
3. 지원성과 등 기타 수탁사업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사업비 잔액보고 및 처리)**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사업 종료 후 또는 위탁취소 후 수탁사업 관리비의 집행잔액과 이자 등의 잉여금을 국고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사업 내에서 동일 목적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재사용할 수 있다.

**제9조(사업관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사업비의 사용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관리비 집행실적

3. 비목별 사용명세서(소정 양식)

②교육부장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집행잔액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검토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제1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수탁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학술진흥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세칙운용) (전문기관의 장)은 수탁업무를 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세칙을 운용할 수 있다.

제13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교육부장관 (직인)

(전문기관의 장) (직인)



<연구과제 요약서>

고유번호		보안등급분류	보안( ), 일반( )	공개가능여부	가, 부
과제명					
주관연구 책임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연구목표

○ 연구내용

○ 연구에 따른 기대성과

---

1. 연구과제 수행 필요성

가. 사업추진 및 관리 근거

나. 연구의 필요성

다. 대상 사업 및 사업목적

2. 연구목표 및 중점 추진내용

가. 연구목표

나. 연구내용

3. 연구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가. 연구 추진전략·방법

---

나. 연구의 추진체계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가. 총괄(편성표)

나.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	국문	(한문)		생년월일	
	영문				
직장	기관명			전화	- -
	전공			FAX	- -
	부서		직위	휴대전화	- -
	주소	(우편번호) -		E-mail	
주택	주소	(우편번호) -		전화	- -

(2) 학력

연도		학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	.				
.	.				
.	.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고
부터	까지			
.	.			
.	.			

(4) 주요연구실적

연구제목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역할(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사업비 지급기관	비고

다. 참여 연구원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 기관명	직급	전공및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6.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총괄표

(단위:천 원)

항목	비목	연도	사업비	비율	비고
인건비	· 전문인건비				
	· 학생인건비				
	소계				
직접비	· 장비·재료비				
	· 학술연구비				
	· 학술활동수당				
	소계				
간접비					
사업비총액					

나. 비용 항목별 소요명세

(1) 인건비

(가) 전문인건비

기관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	참여 시작일 <sup>26</sup>	참여 개월	참여 율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	----	------	-------------	----	-------------------------	----------	---------	----	---------------	----

명				여	참여 종료일	수	(%)		사업 명	참여율 (%)	
					..						
					..						
					..						
					..						
					..						
합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천원)

기관 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 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 수	참여 율 (%)	총액	비고
					참여 종료일				
					..				
					..				
					..				
					..				
					..				
합계									

(2) 직접비

(가) 장비·재료비

① 기기·장비 및 연구시설비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원)	비고
				27			가

합 계							

② 재료비, 전산처리 및 관리비 등

구분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원)	비고
합 계							

(나) 학술연구비

구분		산정기준	금액(원)	비고
여비	국내	책임권 : 00인×00원×00회 = 서임권 : 00인×00원×00회 = 원권 : 00인×00원×00회 =		
	국외	책임권 : 00인×00원×00회 = 서임권 : 00인×00원×00회 = 원권 : 00인×00원×00회 =		
시내교통비		책임권 : 00인×00원×00회 = 서임권 : 00인×00원×00회 = 원권 : 00인×00원×00회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사무용품비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 항공료 : 00원×00인 =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		
교육훈련	국 내	채임금 : 00인×00원×00회 = 선임금 : 00인×00원×00회 = 원 배 : 00인×00원×00회 =		
	국 외	채임금 : 00인×00원×00회 = 선임금 : 00인×00원×00회 = 원 배 : 00인×00원×00회 =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기술명 : 도입국 : 금액(원) : 관련세부연구내용 :		
특허정보조사비				
식대				
합 계				

(다) 학술활동수당 :            ×    명    =    원

(3) 간접비



②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수행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의 독립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원의 연구과제 수행 및 관련 행정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은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의 감독권 행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사업비의 지급)** ①전문기관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본 계약에 명시된 사업비를 주관연구기관에게 지급하며, 간접비는 기관별 간접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리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사정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주관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령”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과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관리는 주관연구기관에서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예금이자 는 연구에 재투자하거나 그 밖에 전문기관에게 따로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승인받은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는 시행규칙 별표의 비용항목별 계상기준 및 처리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하여 사용한 금액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또한 학사, 석사 및 박사 과정 중에 있는 학생 등의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공동관리를 할 수 없다.

③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해당연도 연구기간 내에 발생한 사업비 사용잔액을 해당과제의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중간보고)** 주관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및 차년도 연구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결과보고)**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은 사업비를 환수하고 환수일로부터 2년간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결과보고서
2. 연구요약문
3.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 4 연구성과 및 연구결과물 등의 정보입력

②전문기관은 기제출한 정산결과 등의 검토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주관연구기관에게 집행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연구결과물 미제출)** ①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물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문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해 처리규정 제38조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제1항에 의해 제재조치를 받은 이후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전문기관은 제재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재 해지시점은 전문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③단,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충분히 성실하게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문기관은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소명서 및 연구수행 전반에 대한 별도 평가를 통해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제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연구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본 연구과제 수행의 결과로 취득하는 연구기반 시설 및 학술정보용 도서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지식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전문기관은 연구결과가 국가 안보 등 공익적 목적에 필요하거나 주관연구기관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물을 교육부(정부) 또는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9조(연구성과의 공개 및 활용)** ①전문기관은 연구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연구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은 본 연구과제의 결과보고서·결과물 및 주요 연구성과를 전문기관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연구성과의 공개·이용 및 활용에 대해 전문기관에게 허락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문기관은 공개·이용 및 활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협약의 변경)**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단,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sub>2</sub>중단 시점 30일 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연구협약의 해약)** ①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3. 연구과제수행이 지연되어 목표한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를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은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즉시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을 해약한 때에 전문기관은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영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 (관계자료 제출 등)**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 또는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는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연구사업의 소관법령 및 처리규정, 사업별 하위지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 지급중지 및 회수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1. 허위, 이종 지급 및 그 밖의 부정행위로 사업비를 받은 자 : 5년
2.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 : 2년~5년(구체적 기한은 처리규정 제25조제6항 각호에 따른다)
3. 학술활동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자 : 2~5년
4. 연구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자 : 1년
5.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6. 주관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7. 사업비 지급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기타 연구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제2항의 제5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와 정도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제한 여부 및 제한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그 밖의 준수사항)** ①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 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관연구기관과 주관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해석에 의한다.

**제16조 (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전문기관에 대하여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년      월      일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직 인

별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000사업 협약변경 신청서

<b>대상과제 개요</b>	사 업 명			
	과 제 명			
	과제번호	선정연도-사업코드-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명		연락처	(T)                      (F)
	당해연도 연구비		집행잔액	천원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위 연구과제에 대한 협약내용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연구를 수행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변경내역 및 변경사유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 구분 :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연구과제명, 기타

- 붙임 : 1. 연구원 교체 확인서  
 2. 연구참여 동의서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변경후)

20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_\_\_\_\_ (인)

주관연구기관장    :    \_\_\_\_\_ (직인)

[붙임 1]

### 연구원 교체 확인서

기 관 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원 교체(추가) 사유

--

20. . . .

교체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신규 연구참여자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연락처	

[붙임 2]

## 연구참여 동의서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본인은 위 연구과제에 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 . .

연구참여 예 정 자	소 속		성 명	(인)
	생년월일		직 위	
	연구참여구분		연락처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붙임 3]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 속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일반공동)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인력,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

## 연구수행 역할 분담표 (변경후)

연구소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참여구분	소 속	연구역할분담내용	연구보조원 활용인원수
	성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전임연구교수)			
공동연구원 (일반공동)			
공동연구원 (전임연구원)			
• • •			

※ 연구역할분담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참여구분란에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전임연구원, 일반공동, 박사급연구원)으로 표기함